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08
----------	------------

제안년월일 : 2025년 4월 24일

제안자 : 윤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임장 양식을 신설하면서 해당 별지 제8호서식의 활용에 관련된 본문 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별지 제8호서식 내 위임장의 위임내용에 수정된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양식의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8호서식을 소지한 자에 대한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제16조제4항 신설)
- 별지 제8호서식 중 위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안 별지 제8호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안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본인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회장 귀하

유의사항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③ (생략)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④ 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가 의원인 경우, 임기 중 추천할 수 있는 건수의 상한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 ----- <u>다음 각 호</u> <u>중 제1호 및 제2호에</u> <u>해당될 때에는 표창을</u> <u>취소하며, 제3호</u> ---- ----- ----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개정안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제16조(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 ③ (생략)	제16조(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④ <u>표창수여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u>

<신 설>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별지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별지 제8호서)

위 임 정

취급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본인의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받을 것을 위임합니다.

위임받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三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유치사

- [illegible]

210mm×237mm(책상자 809/㎡)

■이원복발기대회 수상 로제 (별지 제4호)

■이원복발기대회 수상 로제 (별지 제4호)

위 임 :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18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본인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취업받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여왕 또는 왕)	
	취업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15 16

위임하는 사람 (이명 포는 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구

유의사

1. 위첨발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 인장사찰(출입차량사찰증, 외국인통행차량사찰증, 국내기소신고 차량사찰증, 법제출입, 지명제 입법출입 등)에 따라서는 위첨발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하여 복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신장 도록 또는 차량 위첨발장을 작성하여 신장발 경주에는 「형법」 제210조 제200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nm×297nm(책상지 90g/㎡)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가 의원인 경우, 임기 중 추천할 수 있는 건수의 상한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다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표창을 취소하며, 제3호에”로 하고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적 조 서

(1) 성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소													
(6) 직업					(7) 소속								
(8) 직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의회의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속					(15) 직위								
(17) 직급					(18)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													

주요 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	--

[illegible]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	--

--	--

--	--

--	--

[illegible]

--	--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본인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회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가 의원인 경우, 임기 중 추천할 수 있는 건수의 상한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u>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 ----- <u>다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u> <u>해당될 때에는 표창을 취소하며, 제3호에</u> ----- ----- <u>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16조(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u>